07

공공부문
성과공유 모델

운영서비스 부문

지원서비스 부문

일반서비스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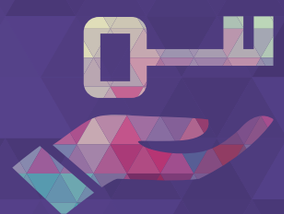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

공공부문

운영서비스



일반위탁운영형

유형 정의 및 특징	• 대상: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시설을 수탁기업(협력사)이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는 사업 • 흐름:서비스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공모 ⇒ 계약체결 ⇒ 공동노력 ⇒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의해 매출액 분배 혹은 현금 인센티브 제공
협력 방법 (예시)	• 운영비 지원 •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지원 • 전문인력 파견 및 공동TF팀 구성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 세무 등 법무서비스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예시)	• 매출액 배분 혹은 현금 인센티브 지급 • 장기계약 등
적용 가능 분야	•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모든 위탁기업(모기업) 적용 가능 (단순 임대사업 제외)

사회공헌형위탁운영형

유형 정의 및 특징	• 대상:위탁기업(모기업) 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설치 예정 중인 커피전문점과 같은 소규모 서비스 시설의 운영을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 흐름:서비스 시설의 위탁운영을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 단체에게 공모 ⇒ 계약 체결 ⇒ 공동노력 ⇒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의해 매출액 분배 혹은 현금 인센티브 제공
협력 방법 (예시)	• 해당 시설 무상 설치 • 해당 시설 무상 혹은 저가 임대 •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설비 무상 혹은 저가 지원 • 시설 유지 및 보수 지원 • 컨설팅 업체 및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경영지도 •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 세무 등 법무서비스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예시)	• 매출액 배분 • 장기계약 • 추가 운영(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여러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적용 가능 분야	• 해당 기관 내에 커피전문점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계획 중인 모든 위탁기업(모기업) 적용 가능 (민간부문 가능)

일반위탁운영형

일반위탁운영형 성과공유제란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해 배분하거나, 운영비의 일체를 일반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기업(협력사)의 운영이 평가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매출액의 일부를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수탁기업(협력사)에 제공하는 유형

협력방법

운영비 지원,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지원, 전문인력 파견 및 공동TF팀 구성,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세무 등 법무서비스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매출액 배분 혹은 현금 인센티브 지급, 장기계약 등

1. 유형개요 및 수행절차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2)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단순 임대사업 제외)에 적용 가능

가) 특히,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주력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탓에, 시설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잘 부합

나)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운영 및 관리가 주력 사업이어서, 소유하고 있는『청풍리조트』의 운영을 리조트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위탁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연금에 다시 귀속하고 있음(하지만,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3) 다만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매우 적은 부분(일례, 매출액의 1~2%)을, 사전 계약에 의거 로열티 형태로 수탁기업(협력사)으로부터 제공받는 분배방식이 성과공유방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가)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수탁기업(협력사)이 모두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로열티 형태로 받아가는 비중이 크다면, 수탁기업(협력사)의 부단한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불공정 거래의 개선을 기치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

나)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의 발생이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 제공받은 로열티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명의로 기부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4) 또한 이 경우 위에서 제시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 수탁기업(협력사)이 수탁한 시설물의 운영에 노력을 경주하여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은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지원, 전문인력 파견 및 공동TF팀 구성,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자금 지원(자금 대여, 보증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세무 등 법무서비스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됨

일반위탁운영형의 성과공유

A.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하는 경우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계약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해 배분하는 유형

〈수행절차〉

1) 시설 위탁 운영 관련 공모 및 입찰

2) 수탁기업(협력사)과 계약 체결

가) 위탁 시설의 운영이 수탁기업(협력사)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대기업 · 수탁기업(협력사) 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계약 가능

나)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1) 제반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해당 제반비용은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한다는 조항

(2) 해당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3) 성과 배분에 대한 합의: 즉,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의 몇 %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에 로열티 형태로 납부할 것인지

에 대한 합의

3)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가)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나)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다)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가)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나)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의 '과제확인서' Tab 클릭

5) 해당 운영 사업의 목표에 대한 공동노력

6)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거, 성과 배분

7)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2. 성과공유방식

1) 수입(매출액) 배분

사전 계약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 간에 배분

*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기업(모기업)의 경우, 제공받은 로열티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명의로 기부

2) 장기계약

해당 시설 운영에 대한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

* 주지하듯이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수입의 매우 적은 부분만을 로열티 형태로 제공받는 성과배분방식

이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

* 같은 이유로, 수입 배분과 같은 성과배분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계약 인센 티브는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B.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계약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해 배분하는 유형

〈수행절차〉

1) 시설 위탁 운영 관련 공모 및 입찰

2) 선정된 수탁기업(협력사)와 계약 체결

가) 위탁 시설의 운영이 수탁기업(협력사)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위탁기업(모기업 · 수탁기업(협력사) 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계약 가능

나)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1) 제반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해당 제반비용은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부담한다는 조항

(2) 해당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3) 성과 배분에 대한 합의: 즉,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의 몇 %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 이 때, 별도의 '서비스수준 협약'이 계약에 추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합의되어야함:

·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 [별첨 I]의 예시 참고

·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측정주체,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점수 등: [별첨 II]의 예시 참고

· 평가지표별 목표치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공유 내용: 목표치

와 평가지표 총괄표 예시는 [별첨 Ⅲ] 참고

· 운영절차 및 운영체계: 성과보고형식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절차와 이의제기 절차 등: [별첨 Ⅳ]의 예시 참고

· 수탁기업(협력사)과 계약체결이후 별도의 성과공유계약을 맺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별첨 Ⅴ] 참고

3)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1)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2)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3)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5) 해당 운영 사업의 목표에 대한 공동노력

6)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거, 성과 배분

별도의 '서비스수준 협약'이 계약에 추가된 경우: '마'와 '바' 단계 사이에 해당 시설 운영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 실시

7)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3. 성과공유방식

1) 수입(매출액) 배분

사전 계약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 간에 배분

*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기업(모기업)의 경우, 시설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명의로 기부

2) 장기계약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

* 주지하듯이, 수입 배분과 같은 성과배분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계약 인센티브는 "단순 용역 계약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성과공유제로 인정받을 수 없음

[[별첨 Ⅲ]의 평가지표 총괄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평가 점수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서비스수준 협약이 별도로 존재할 때, 성과공유방식 예시]

평가등급	평가점수 총합	성과공유 내용	
		인센티브	계약기간
1	95점이상	매출액의 1% 추가지급	1회에 한하여 2년 추가연장
2	90점 이상~95점 미만	매출액의 0.5% 추가 지급	
3	85점 이상~90점 미만	인센티브/페널티 없음	계약 종료 시 계약 연장 없음
4	85점 미만	인센티브/페널티 없음	

이상의 성과공유방식예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Ⅵ] 참고

사회공헌형위탁운영

사회공헌형위탁운영 성과공유제란

위탁기업(모기업) 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 예정 중인 커피전문점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운영을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 단체에게 위탁하고,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해 배분하고, 로열티 형태로 지급받은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유형

협력방법

해당 시설 무상 설치, 해당 시설 무상 혹은 저가 임대,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설비 무상 혹은 저가 지원, 시설 유지 및 보수 지원, 컨설팅 업체 및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경영지도,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세무 등 법무서비스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매출액 배분, 장기계약, 추가 운영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여러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1. 유형개요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소규모 시설의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1조의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잘 부합

2) 위탁기업(모기업) 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운영 예정 중인 커피전문점과 같은 모든 소규모 시설에 적용 가능

가) 비록 일반공공부문 · 기관 각각의 설립취지와 주요 사업은 매우 다양하지만,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어느 위탁기업(모기업)에서나 해당 임직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가능

나) 대다수 위탁기업(모기업)의 사업목적이 이들 소규모 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아니므로, 이들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다) 다만 이들 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 단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공헌에 기여

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운영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상대적으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 단체와의 계약은 보다 현실적

마)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본사내에 커피전문점을 설치한 후 취약계층이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한 단체에게 무상 임대해주고,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바)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 형태로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명의로 해당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원

3) 위탁 운영하는 주체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감안, 이러한 성과공유제 하에서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은 '해당 시설 무상 혹은 저가 임대' ,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설비 무상 혹은 저가 지원' , '시설 유지 및 보수 지원' 등의 지원은 반드시 제공할 필요

수탁기업(협력사)의 종사자가 시설물의 운영을 통해 수입이 증대되어 사회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은 컨설팅 업체 및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경영지도, 자금 지원(자금 대여, 보증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세무 등 법무서비스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됨

4) 그 외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하는 경우, 같은 이유로,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매우 적은 부분(일례, 매출액의 1~2%)을, 사전 계약에 의거 로열티 형태로 수탁기업(협력사)으로부터 제공받는 분배방식이 성과공유방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가) 이들 제반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인 수탁기업(협력사)이 모두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로열티 형태로 받아가는 비중이 크다면, 사회공헌형 성과공유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음

나)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의 발생이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 제공받은 로열티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명의로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형 성과공유제의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음

사회공헌형위탁운영의 성과공유

2. 수행절차

1)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자금으로만 기관 내 시설 설치

2) 시설 위탁 운영 관련 공모 후 업체 선정

입찰 참가자 및 선정 업체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 단체여야 함

3) 해당 업체와 계약 체결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1)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유지보수 비용 중 수탁기업(협력사)이 부담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명시

(2)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 해당 시설의 무상 설치 및 무상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에서 제시한 각종 지원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성과 배분에 대한 합의: 즉,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의 몇 %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에 로열티 형태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4)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가)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나)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다)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5)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가)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나)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6) 해당 사업의 운영 목표에 대한 공동노력

7)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거, 성과 배분

8)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3. 성과공유방식

1) 수입(매출액) 배분

사전 계약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간의 배분

* 로열티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즉 수입의 전체를 수탁기업(협력사)이 귀속하게 하는 경우도 성과공유제로 인정

* 제공받은 로열티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명의로 기부함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

2) 장기계약

해당 시설 운영에 대한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

* 주지하듯이 수탁기업(협력사)이 사회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운영수입에 기초한 현금배분방식이 사회공헌형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

* 같은 이유로, 수입 배분과 같은 성과배분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계약 인센티브는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추가 운영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사가 존재하는 경우, 각 지사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이들 사업의 운영을 동일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위탁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

공공부문

지원서비스



기술이전형

유형 정의 및 특징	• 대상: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수탁기업(협력사)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흐름:기술이전에 대한 공모 ⇒ 계약 체결 ⇒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 하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 적용 노력 ⇒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의해 매출액 분배
협력 방법 (예시)	• 전문인력 파견 혹은 공동TF팀 구성,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이전된 기술의 구체적 활용에 대한 지원 • 성능검증 test bed지원 •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 시험장비 무상 · 저가 활용 지원 • 원자재 구매 지원 및 공동기술개발 공간 제공 •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및 영업망 활용 지원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주요 경영정보 제공 • 특허관리, 세무,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예시)	• 매출액 배분 • 차후 기술이전과 관련한 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적용 가능 분야	•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든 위탁기업(모기업) 적용 가능 (민간부문 가능)

해외동반진출형

유형 정의 및 특징	• 대상: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제품/시스템 혹은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시스템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서 판매/적용될 수 있게 하는 사업 • 흐름: 기술/제품/시스템 공동개발 혹은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협력사) 제품/시스템에 적용 ⇒ 위탁기업(모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노력 ⇒ 위탁기업(모기업)과 해당 수탁기업(협력사)이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계약 체결 ⇒ 계약에 근거한 수주액 실현
협력 방법 (예시)	• 기술/제품/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한 아래와 같은 지원 전문인력 파견, 공동TF팀 구성 성능검증 test bed지원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시험장비 무상 · 저가 활용 지원 원자재 구매 지원 및 공동기술개발 공간 제공 자금 지원(자금 대여, 보증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아래와 같은 지원 해외 영업망 활용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구매수요 정보 제공 특허 관리, 세무,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예시)	• 컨소시엄 계약에 의거한 수주액 현실화 • 장기계약 등
적용 가능 분야	• 위탁기업(모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과 공동으로 기술/제품/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전된 기술이 적용된 수탁기업(협력사)의 제품/시스템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 판매/적용될 수 있게 하는 사업 (공공부문에만 국한)

기술이전형

기술이전형 성과공유제란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수탁기업(협력사)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해 배분하는 유형

협력방법

전문인력 파견 혹은 공동TF팀 구성,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이전된 기술의 구체적 활용에 대한 지원, 성능검증 test bed지원,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시험장비 무 · 저가 활용 지원, 원자재 구매 지원 및 공동기술개발 공간 제공,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및 영업망 활용 지원,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주요 경영정보 제공, 특허관리, 세무,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매출액 배분, 차후 기술이전과 관련한 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1. 유형개요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2) 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수탁기업(협력사)이 사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

가) 한국전력은 6개 발전사로 분할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 혹은 특허권을 수탁기업(협력사)에게 이전하는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면서, '모범적인 성과공유 활동'을 영위하는 위탁기업(모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

나) 이는 성과공유제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불공정한 거래 개선' 속에서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력 제고를 통해 창조성, 전문성을 담보한 수탁기업(협력사)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임

다) 이렇게 볼 때, 위탁기업(모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협력사) 제품에 적용하거나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제공하는 것은 성과공유제의 궁극적 목표의 실현과 매우 근접한 형태의 성과공유 활동

3) 기술이전형에서 일반적인 성과공유방식은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제공된 기술,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 저가로 제공한 후 수탁기업(협력사) 제품에 적용, 발생한 수입의 매우 적은 부분(일례, 매출액의 1~2%)을, 사전 계약에 의거 기술료 형태로 수탁기업(협력사)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분배방식

가) 이 때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로열티 형태로 받아가는 비중이 크다면, 수탁기업(협력사)의 부단한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불공정 거래의 개선을 기치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음을 염두

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전된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의 적용으로 발생한 수입의 전부를 수탁기업(협력사)이 소유하는 방식(즉 '0%' 로열티) 역시 성과공유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발전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

다) 만약 로열티를 제공받는다면,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은 해당 로열티 금액을 기관 명의로 기부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4) 기술이전형 또 다른 성과공유방식은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해당 수탁기업(협력사)에게 기술, 지적재산권 등을 제공할 당시 한 번만 저가의 기술료를 받고 그 기술이 수탁기업(협력사) 제품에 적용된 후 발생하는 수입은 수탁기업(협력사)이 모두 소유하게 하는 배분방식

가) 이러한 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탁기업(모기업)이 『인터넷 진흥원』

나) 아마도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의 적용으로 얼마만큼의 매출이 증대되었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대다수의 "진흥관련 공공기관 사업"에서 이러한 배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경우 비록 저가로 제공 당시 한 번만 기술료를 지급받지만,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의 제공을 받은 수탁기업(협력사) 입장에서는 이들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여 매출로 이어지기 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라) 따라서 이 경우, 앞서 살펴본『서비스 수준 협약』과 유사하게, 어떠한 수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야 초기에 지급된 기술료 이상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특별 조항으로 두어 양자 합의하에 계약에 포함되어야 성과공유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예를 들어,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제공된 해킹방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해킹방지 효과가 적용 전에 비해 1년 내에 3%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 초기 기술료를 뛰어넘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에 구체화
* 이때의 목표 성과는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이 모두 인정하는 제3의 기관(국책연구소 혹은 컨설팅 업체)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5) 기술이전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활동 내용: 기술, 지적재산권의 무상 혹은 저가 제공 그 자체만으로 지원활동의 요건이 충족될 수 없으며, 적어도 전문인력 파견 혹은 공동TF팀을 구성하여 이전된 기술이 해당 업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존재할 필요

가)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많은 위탁기업(모기업)에서 수탁기업(협력사)에게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제공한 자체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

나) "진흥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활동은 원래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일 뿐, 성과공유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

다) 또한,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이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만 될 뿐 수탁기업(협력사) 제품에 이들 기술의 현실적 적용에 무관심하다면, 기술이전의 결과가 기술적용에 의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따라서 성과공유 활동이라고 간주할 수 없음

라) 따라서, 적어도 전문인력 파견 혹은 공동TF팀을 구성하여 이전된 기술이 해당 업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존재할 필요 (대표적 사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성능 검증 test-bed 지원)

마) 이 외에도,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제공받은 수탁기업(협력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대금, 인력, 판로 등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

2. 수행절차

기술이전형의 성과공유

1) 기술 이전과 관련한 공모 후 업체 선정

2) 선정된 수탁기업(협력사)과 계약 체결

계약체결단계에서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가) 해당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나) 성과 배분에 대한 합의

* 즉, 이전된 기술 등의 사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의 몇 %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에 기술료 형태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매출액의 전부를 수탁기업(협력사)이 소유하되,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제공 당시 한 번만 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어떠한 수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야 초기에 지급된 기술료 이상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3)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가)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나)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다)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5)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 하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 적용 노력

6)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거, 성과 배분

7)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3. 성과공유방식

1) 수입(매출액) 배분
사전 계약에 의거,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제공된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매출액)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 간에 배분

* 일반적으로는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매출액의 일부를 기술료 형태로 지급받지만, 기술료를 받지 않고 매출액의 전부를 수탁기업(협력사)에게 귀속하는 형태 역시 성과공유제로 인정
*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은 제공받은 기술료를 기관 명의로 기부 가능
*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매출액의 전부를 수탁기업(협력사)이 소유하되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제공 당시 한 번만 기술료를 지급받는 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수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야 초기에 지급된 기술료 이상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즉 목표 성과에 대한 합의가 계약에 반영된 경우) 실제로 그러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수탁기업(협력사)의 확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될 때 성과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차후에 있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주지하듯이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공유 모델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수탁기업(협력사 제품에 적용되어 발생한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이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
* 따라서, '차후에 있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성과공유방식은 '매출액 배분'과 같은 성과공유방식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해외동반진출형

해외동반진출형 성과공유제란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이 공동으로 기술/제품/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협력사)의 제품/시스템에 적용한 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이들 기술/제품/시스템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 진출, 계약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배분하는 형태의 성과공유 활동

협력방법

기술 · 제품 · 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한 아래와 같은 지원 : 전문인력 파견, 공동TF팀 구성, 성능검증 test bed지원,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 이전, 시험장비 무상 · 저가 활용 지원, 원자재 구매 지원 및 공동기술개발 공간 제공, 자금 지원(자금 대여, 보증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아래와 같은 지원 : 해외 영업망 활용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구매수요 정보 제공, 특허 관리, 세무,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등

성과공유방식

컨소시엄 계약에 의거한 수주액 현실화, 장기계약 등

1. 유형개요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2) 해외 동반진출형 성과공유모델은 수탁기업(협력사) 성장의 활로인 해외 판로 개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동반진출형은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필요
가) 여전히 위탁기업(모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활동이 '지원활동'의 한 형태인지, 현금배분과 같은 '성과배분방식'의 한 형태인지에 대한 논란 존재

나) 또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때, 기존의 품질/납기/원가 유지 등 완성차업체의 필요에 의해 국내 수탁기업(협력사)들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양상이 빈번

다) 따라서,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의 해외 동반진출의 모든 경우를 성과공유 활동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면, 성과공유제의 정체성 및 취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존재

4) 따라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동반진출 형태만을 성과공유 활동으로 인정

가)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의 해외 동반진출

* 민간부문의 해외 동반진출은 그 자체로 성과공유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나) 해외 현지에 판매/적용되는 기술, 제품, 시스템은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거나,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이 협력업체의 기술, 제품, 시스템에 적용된 것이어야 함

* 즉, 성과공유제로 등록/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술/제품/시스템이 공동 개발되었거나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된 것이라는 증빙서류 필요

다) 해외 바이어와 계약 시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의 컨소시엄 형태여야 할 것

*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계약한 후, 수탁기업(협력사)에 재하청을 주는 형태의 계약은 성과공유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

5) 앞의 세 가지 요건 이외에도 위탁기업(모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해외 수요처 발굴을 위해 '해외 영업망 활용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구매수요 정보 제공' , '특허 관리, 세무,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홍보 및 광고' 등

가) 주지하듯이, 해외 수요처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탁기업(협력사)이 세계적으로 경쟁할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를 찾기는 매우 어려움

나) 이 때 그러한 기술을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는 해외 구매자가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에 주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해외 수요처 발굴 노력은 수탁기업(협력사)의 뛰어난 기술력이 해외 현지에 판매/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교가 역할을 수행하게 됨

라) 일례로, 한국석유공사는 '지오그린21'이라는 수탁기업(협력사)과 함께 지하에 석유를 저장하는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요처의 관계자를 초청한 세미나/컨퍼런스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이러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노력은 실제 해외 현지수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2. 수행절차

해외동반진출형의 성과공유

1)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 간 기술/제품/시스템의 공동개발 혹은 위탁기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을 수탁기업(협력사)의 제품/시스템에 적용

가) 공동기술 개발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양자의 연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산학연 연구사업'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나)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기술이전형' 참조

2)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노력

3)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이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 구매처와 계약 체결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 모델에서의 계약은 해외와의 계약이므로,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필요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가)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나)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5)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 하에 수탁기업(협력사)의 기술 적용 노력

6)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거, 성과 배분

7)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 성과공유제로 등록/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술/제품/시스템이 공동 개발되었거나 해당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된 것이라는 증빙서류 필요

8) 해당 사업의 운영 목표에 대한 공동노력

9)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거, 성과 배분

10)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3. 성과공유방식

1) 컨소시엄 계약에 의거한 수주액 실현

2) 장기계약

* 해외 동반진출형 성과공유모델은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컨소시엄형태로의 해외 동반진출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수주는 자연스레 해당 위탁기업(모기업)과 수탁기업(협력사) 사이의 장기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

공공부문

일반서비스

서비스수준협약형
(서비스 및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형, 전산 유지 및 관리 부문)

유형 정의 및 특징	• 대상: 서비스 또는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 전산 서비스 유지 · 관리의 일부를 수탁기업(협력사)에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업(모기업)의 사업 • 흐름: 평가기준 사전합의 ⇒ 계약 체결 ⇒ 공동노력 ⇒ 평가기준 이상 성과달성 ⇒ 추가 인센티브 제공
협력 방법 (예시)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 자금 지원, 자금 대여, 보증 지원 • 성능검증 test bed지원 •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 시험장비 무상 · 저가 활용 지원 • 공동기술개발 공간 제공 • 유통, 창고, 운송 등 물류 인프라 무 · 저가 활용 지원 • 기술료 지원

협력 방법 (예시)	• 원자재 구매 지원 •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주요 경영정보 제공 • 특허 관리, 세무,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 홍보 및 광고 지원 등 • 수탁기업(협력사) 직원의 전산 서비스 체크를 위한 기관 내 공간 제공 •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무상 제공 • 전문인력 파견 및 공동TF팀 구성 • 전산 서비스 시험장비 무상 혹은 저가 활용 지원 • 전산 서비스 관련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 영업망 활용 지원 • 구매수요 정보 제공 등
성과공유방식 (예시)	• 현금보상(인센티브 지급) • 장기계약 등
적용 가능 분야	• 아웃소싱(용역) 계약 체결, 서비스관련 사업분야 두루 적용 가능 (민간부문 가능) • 전산 서비스를 아웃소싱(용역)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모든 위탁기업(모기업)

서비스수준협약형

서비스수준협약형 성과공유제란

위탁기업(모기업)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원가절감을 위해, 수탁기업(협력사)과 일반 공공부문 간에 서비스 및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합의 계약 체결을 하거나 위탁기업(모기업)의 전산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업(협력사)과 해당 위탁기업(모기업) 간에 체결된 전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합의한 후, 사전에 계약된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 하에 수탁기업(협력사)이 평가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위탁기업(모기업)이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수탁기업(협력사)에 제공하는 유형

협력방법

컨설팅 업체 및 기관 연계 경영지도, 자금 지원 · 자금 대여 · 보증 지원, 성능검증 test bed지원,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시험장비 무상 · 저가 활용 지원, 공동기술개발 공간 제공, 유통 · 창고 · 운송 등 물류 인프라 무상 · 저가 활용 지원, 기술료 지원, 원자재 구매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입찰정보 등 주요 경영정보 제공, 특허 관리 · 세무 · 관세 등 법무서비스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직원의 전산 서비스 체크를 위한 기관 내 공간 제공,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무상 제공, 전문인력 파견 및 공동TF팀 구성, 전산 서비스 시험장비 무상 혹은 저가 활용 지원, 전산 서비스 관련 설비 무상대여 및 무상 · 저가이전, 자금 및 홍보 · 광고 지원, 수탁기업(협력사) 임직원 교육, 영업망 활용 지원, 구매수요 정보 제공 등

성과공유방식

현금보상(인센티브 지급), 장기계약 등

서비스수준협약형의 성과공유

1. 유형개요 및 수행절차

A. 서비스 개선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2)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반 공공부문 성과공유제 TF팀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주력 사업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일례로, 『청소용역과 같은 환경미화 서비스 사업』은 대부분의 위탁기업(모기업)에서 수탁기업(협력사)에 용역을 주고 있음

3) 계약한 수탁기업(협력사)이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위탁기업(모기업) 사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동일 서비스 수준에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 사업"에도 적용 가능

가) 여기서는, 『청소용역과 같은 환경미화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절차와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 내용, 성과공유방식을 설명

나) 이외 다른 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되 해당 사업

에 걸맞은 성과 수준, 평가 방안, 그리고 성과 공유 내용을 반영하면 성과공유제 확인을 받을 수 있음

〈수행절차〉

1) 계약 체결한 수탁기업(협력사)과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 수준, 평가 방안, 그리고 성과 공유 내용 및 방안 합의

가) '가'단계에서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1)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 [별첨 Ⅳ]의 예시 참고

(2)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측정주체, 측정도구, 측정주기, 측정구간, 평가점수 등: [별첨 Ⅴ]의 예시 참고

(3) 평가지표별 목표치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공유 내용: 목표치와 평가지표 총괄표 예시는 [별첨 Ⅵ] 참고

(4) 해당사업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내용: [별첨 Ⅶ]의 예시 참고

(5) 운영절차 및 운영체계: 성과보고형식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절차와 이의제기 절차 등: [별첨 Ⅷ]의 예시 참고

나) 수탁기업(협력사)과 계약체결이후 별도의 성과공유계약을 맺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별첨 Ⅸ] 참고

2) '가'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가)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나)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다)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2년에 한번 갱신)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가)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나)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4) 해당 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5)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B. 시설·유지·보수·개선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2)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반 공공부문 성과공유제 TF팀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주력 사업이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일례로,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은 대부분의 위탁기업(모기업)에서 수탁기업(협력사)에 용역을 주고 있음

3)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에도 적용 가능

이외 다른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되 해당 사업에 걸맞은 성과 수준, 평가 방안, 그리고 성과 공유 내용을 반영하면 성과공유제 확인을 받을 수 있음

〈수행절차〉

1) 계약 체결한 수탁기업(협력사)과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에 에 대한 성과 수준, 평가 방안, 그리고 성과 공유 내용 및 방안 합의

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1)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 [별첨 Ⅳ-Ⅰ]의 예시 참고

(2)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측정주체, 측정도구,

측정주기, 측정구간, 평가점수 등: [별첨 V-I]의 예시 참고

(3) 평가지표별 목표치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공유 내용: 목표치와 평가지표 총괄표 예시는 [별첨 VI-I] 참고

(4) 해당 사업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내용: [별첨 VII]의 예시 참고

(5) 운영절차 및 운영체계: 성과보고형식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절차와 이의제기 절차 등: [별첨 VIII]의 예시 참고

나) 수탁기업(협력사)과 계약체결이후 별도의 성과공유계약을 맺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별첨 IX] 참고

2)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가)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나)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다)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가)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나)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4) 해당 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5)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C. 전산 유지관리 서비스

1) 이 유형은 특정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음

2) 위탁기업(모기업)의 사업목표와 주력 사업은 각각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위탁기업(모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유형

가) 『전산 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 사업』에 대해 대다수 위탁기업(모기업)은 운영 노하우와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

3) 여기서는 전산 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사업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협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시설 유지 · 보수 · 개선 사업"에도 적용 가능

전산 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 이외의 다른 시설 혹은 서비스 유지 · 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아래의 절차를 따르되 해당 사업에 걸맞은 성과 수준, 평가 방안, 그리고 성과 공유 내용을 반영하면 성과공유제로 인정

〈수행절차〉

1) 계약 체결한 수탁기업(협력사)과 전산 서비스 유지 · 관리 사업에 에 대한 성과 수준, 평가 방안, 그리고 성과 공유 내용 및 방안 합의

'협의'단계에서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1)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 [별첨 IV-II]의 예시 참고

(2)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측정주체, 측정도구, 측정주기, 측정구간, 평가점수 등: [별첨 V-II]의 예시 참고

(3) 평가지표별 목표치와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공유 내용: 목표치와 평가지표 총괄표 예시는 [별첨 VI-II] 참고

(4) 전산 서비스 유지 · 관리 사업에 대한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내용: [별첨 VII-I]의 예시 참고

(5) 운영절차 및 운영체계: 성과보고형식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절차와 이의제기 절차 등: [별첨 VIII]의 예시 참고

(6) 수탁기업(협력사)과 계약체결이후 별도의 성과공유계약을 맺어

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별첨 IX] 참고

2) 합의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사전계약서 체결

가) 이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임

나) 성과공유 확인 시, 정형적인 양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로 인정될 것

다)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올려져 있는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안) 양식을 참고할 수 있음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도입기업 확인(2년에 한번 갱신)을 받은 후 계약서 등록

가) 도입기업 확인서 양식과 도입기업 확인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나) 계약서 제출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4) 전산 서비스 유지 · 관리 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5)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 실적 등록

성과공유 실적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참조

2. 성과공유방식

1) 현금보상

전산 서비스 유지 ·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가 사전에 합의된 목표치를 초과했을 경우,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일정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2) 장기계약

전산 서비스 유지 ·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가 사전에 합의된 목표치를 초과했을 경우,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

(예시): [별첨 VI, VI-I, VI-II]의 평가지표 총괄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를 공유

평가등급	평가점수 총합	성과공유 내용	
		인센티브	계약기간
1	95점이상	계약금액의 4% 추가지급	1회에 한하여 2년 추가연장
2	92점 이상~95점 미만	계약금액의 3% 추가지급	
3	88점 이상~92점 미만	계약금액의 2% 추가지급	
4	84점 이상~88점 미만	계약금액의 1% 추가지급	
5	80점 이상~84점 미만	인센티브/페널티 없음	계약 종료 시 계약 연장 없음
6	80점 미만	인센티브/페널티 없음	

이상의 성과공유방식 예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X] 참고